

[별표 8]

국방 안전사고 등급 구분 기준
(제14조 관련)

등급	인적피해	물적피해
A	·3명 이상 사망 ·7명 이상 중상	·20억원 이상 ·항공기 실종 혹은 대파 * 대파 : 항공기가 수리불가능한 손상을 입어 각군 자산 보유 목록에서 제외되는 파손
B	·2명 이하 사망 ·3명 이상 6명 이하 중상	·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
C	·2명 이하 중상 ·5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작업상 건강장해	·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
D	·2명 이하 경상 ·2일 이상 4일 이하 근무하지 못하는 작업상 건강장해	·0.1억원 이상 1억원 미만
E	·경미상 ·1일 근무하지 못하는 작업상 건강장해	·0.1억원 미만

* 제2조 제8호 중 ‘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’는 별도의 등급으로 분류한다.